

Crew 운영 규정

제정 2023.11.20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Crew를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② “Crew”란 우리 대학의 본질인 호서대학다움(기독교정신+벤처정신)을 추구하는 호서 고유 공동체로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, 운영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체계를 의미한다.
- ③ “Crew”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 - 1. 자유유형 : I (수익창출형), II(비용절감형), III(혁신모델형), IV(벤처혁신형)
 - 2. 지정유형 : 대학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여 발굴·기획한 지정 주제
- ④ “참여인력”은 Crew 운영에 참여하는 리더(Crew리더), 멤버(Crew멤버)를 말한다.

제 2 장 Crew위원회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사부총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재무처장,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문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신규 Crew 추진 타당성 검토 및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
- ② Crew 정기적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
- ③ Crew 목표 달성 평가에 관한 사항
- ④ Crew 목표 달성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
- ⑤ 선정(협약)된 Crew 예산 지원여부에 관한 사항
- ⑥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개최한다.
 - 1.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 - 2. Crew 신규 검토 및 성과평가 등 필요에 의해 소집이 필요한 경우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제7조(행정지원 및 간사) 위원회의 행정지원은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담당하며, 간사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3 장 참여인력 및 추진절차

제9조(참여인력) ① 참여인력은 교내 교직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, 리더와 멤버로 역할을 분담한다.

② 리더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.

1. Crew 추진 총괄
2. 참여인력별 참여등급(안) 작성

③ Crew 협약 이후 참여인력 조정이 필요할 경우, 다음 각 호를 따른다.

1. 참여인력 추가 : Crew 추진에 중대한 필요가 있을 경우 재협약을 통해 추가
2. 참여인력 제외 : Crew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시 제외

제10조(추진절차) ① Crew 지원은 상시 가능하며, 기획처는 Crew 제안자와 협의하여 추진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한다. 단, 기획처장은 기대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Crew는 보류 또는 반려할 수 있다.

② 기획처와 협의 완료된 내용을 바탕으로 Crew 제안자는 계획서를 제출하고, Crew위원회는 Crew계획서 검토 및 선정여부를 심의의결한다.

③ 선정된 Crew는 기획처와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할 수 있다.

제 4 장 성과보상

제11조(업적 인정) ① 참여인력의 업적점수는 Crew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② 참여인력의 업적점수 결정시 리더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.

③ 교원 참여인력의 업적점수는 코어를 포함한 모든 기준점수를 대체할 수 있으며, 해당 교원의 의사에 따라 연구, 산 학협력 또는 봉사분야 점수로 부여한다.

④ 직원 참여인력의 업적점수는 직원평가 항목 중 가점에 반영한다.

제12조(수당 지급) ① 참여인력의 수당은 Crew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② 참여인력의 수당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

③ 제11조에 따라 업적점수가 부여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3조(특별 인사) Crew위원회는 Crew 목표달성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Crew 협약서에 명시된 특별인사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각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 특별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.

제14조(기타)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총장의 승인에 의해 정한다.

② 본 규정은 2023학년도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Crew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23.11.2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